

서울새활용플라자 2층 상점 및 체험공간 인테리어공사 시 방 서



소속 공간마케팅팀
전화 02-2153-0499

팩스 02-2153-0010

기관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www.seouldesign.or.kr

목 차

제 1 장 : 공 사 개 요	3
제 2 장 : 총 칙	4
제 3 장 : 실내건축공사표준시방서	별첨문서

제 1 장 공 사 개 요

1.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새활용플라자 2층 상점 및 체험공간 인테리어공사
-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 공 사 면 적 : 바닥 164㎡ / 벽체 191㎡
- 공 사 위 치 : 서울새활용플라자 2층 열린공간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 SPACE FRAME
- 해 당 공 종 : 가설공사, 건식벽공사, 금속공사, 칠 공사, 시트 필름공사, 가구공사
- 공 사 개 요 : ① 판매 및 체험공간 가설벽체 제작공사
 ② 물품창고 벽공사 및 도장공사
 ③ 체험부스 벽체 도장공사
 ④ 가구 및 집기 제작공사

1.2. 공사범위

(1) 주요공사 범위

구 분	바닥면적(㎡)	벽체면적(㎡)	주재료	비고
체험부스	23.39㎡	72.72㎡	일반구조용탄소강관, 목재파레트	녹막이페인트 1종, 2회 도포
판매부스	48.72㎡	105.60㎡	일반구조용탄소강관, 블록철판, 일반합판	녹막이페인트 1종, 2회 도포
가구 및 집기	-	-	철재드럼통 및 앵글	유성페인트 1급, 2회도포
물품창고	8.80㎡	29.28㎡	건식재료(석고보드, 스틸 런너 & 수평 구조물, 수직 구조물)	수성페인트 1급, 2회도포

1.3.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로 한다.

제 2 장 총 칙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나. 이 시방서의 기재사항 중 당해 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1.2 담당원과 그의 책무

- 가.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재단의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2.1.3 시공자와 그의 책무

- 가.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1.4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1.5 의의

-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설계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1.6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1.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2 공사현장관리

2.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2.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 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 나.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2.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2.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지하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공사시방에 의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공사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라.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3 재료

2.3.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제품으로 한다.
-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

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 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 합

배합을 정해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 본 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 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3.2 재료의 반입

-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2.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 1)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2)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2.3.3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2.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4 시공

2.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4.2 공 정 표

- 가.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2.4.3 시공계획서

- 가.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 나.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2.4.4 원칙도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칙도, 시공도, 견본 등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4.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4.6 시공검사

- 가.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 나. 담당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 1) 공사가 있는 경우
 - 2) 담당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2.4.7 시공의 입회

시공 중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담당원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점에 있어 담당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2.4.8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공사시방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다. 시점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4.9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4.10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의 중요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도서에 의하는 외에, 담당

원과 협의하여 그 조건을 분명히 한다.

2.5 공사기록

2.5.1 공사시공 상세도면

- 가. 시공자는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 전에 설계도면에 미비 된 내용 및 설계도면에 표시 되었더라 상세가 요구되는 부분의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서 및 sample재료를 첨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 나. 부위별 도면의 매수는 시공자가 판단하여 상세가 요구되는 곳 또는,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공정별 시공 상세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 1) 가설공사
 - 2) 건식벽 공사
 - 3) 금속 공사
 - 4) 칠 공사
 - 5) 시트 필름 공사
 - 6) 가구 공사
 - 7) 기타 시공자가 필요한 도면등

2.5.2 기록

-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 나.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 다. 담당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사항에 따른다.

2.5.3 공사사진

공사사진, 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라 촬영하여 제출한다.

2.5.4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라 작성,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6 인도

2.6.1 인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발주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 나. 준공도
- 다.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
(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 자. 담당원의 지시하는 기타 자료, 재료, 기구류